

“教授 國費海外派遣事業의 繼續推進”

文教部 大學財政課

文教部에서는 1983年度에도 例年과 같이 人文社會 및 自然科學分野 教授 100명을 國費로 海外에 派遣하여 研修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IBRD 借款資金에 의한 工學分野 教授 150명을 各國에 派遣할 計劃이다.

教授들의 資質向上과 專攻分野의 學問研究를 促進하기 위한 國費海外派遣研修制度는 1978年度부터 實施되고 있으며, IBRD 借款에 의한 工學·經營學分野 教授海外派遣도 1980년부터 始作되어 그 동안 全國적으로 1천名에 達하는 教授要員들이 惠澤을 받아 왔다.

參考로 이미 完了된 教授海外派遣의 年度別 對象國家 實績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인문계				자연계			
	78	79	80	81	78	79	80	81
미	19	25	29	28	35	32	25	31
영	4	6	3	7	3	6	5	1
프	3	2	2	3	1		1	1
독	3	5	6	3	2	1	1	
화		1						
벨				1				1
오								1
이				1				
일	8	4	8	9	15	15	10	7
중			2	2			1	
호		1					1	1
홍			1	1				
이		1						
집								
계	37	45	51	55	54	54	44	42

82年度에도 100명의 教授가 이미 派遣되었거나 手續中에 있으며, 83年度에 파견할 對象教授의 選定에 관하여는 83년 3월중에 各 大學에 推薦節次가 示達될 豫定이다. 이 事業의 基本計劃을 參考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大學教授 國費海外派遣基本計劃

I. 基本計劃

1. 目的

- 先進國 科學, 技術, 文化知識의 導入
- 大學敎員의 資質向上 圖謀
- 教授研究活動의 深化·擴大

2. 派遣期間

1年을 原則으로 함. 但, 派遣期間終了後 繼續研究가 必要할 경우에는 1年以內 滞在期間延長을 許容할 수 있음. (延長期間의 所要經費는 自費 또는 國庫以外의 財源으로 負擔)

3. 派遣研究機關: 派遣國의 主要大學 또는 著名研究所

4. 派遣教授의 遵守 및 義務事項

가. 遵守事項

- 派遣時 政府가 承認한 研究計劃의 任意 變更不可
- 派遣國에서 우리나라 留學生의 善導役과 現地學生·學者社會의 龜鑑이 되어야 한다.
- 派遣教授는 現地公館과의 連絡體系를 維持하여야 함.
- 派遣研究期間中 直系家族의 病故·死亡·婚事와 國內研究關聯會議參席 등을 除外하고 一時歸國 不許
- 滞在期間中 他機關으로부터 本來의 目的으로 하는 純粹學問研究以外의 條件付 獎學金 또는 研究用役受惠등의 行爲를 禁함.

나. 義務事項

- 派遣期間 終了後에는 即時 歸國하여야 함.
- 歸國報告 및 研究結果發表(詳細한 要領 後述)
- 歸國後 所屬大學등 國內教育機關에서 3 年以上 勤務하여야 함.

5. 推進日程

- 每年 4~6月 特別保安教育, 派遣研究機關과의 協議確定 및 出國
- 每年 7~8月 出國(研究機關과의 協議日程에 따라 個別出國)

6. 所屬大學의 遵守 및 義務事項

- 가. 海外滞在研究期間中 派遣教授의 身分 “派遣勤務”로 함.
- 나. 派遣期間中 派遣教授에 대한 俸給 및 手當을 全額支給토록 所屬大學에 義務를 賦與함(私立大 確約履行).
- 다. 派遣教授 所屬大學(校) 總學長은 派遣教授의 義務不履行時(未歸國 等) 國家가 負擔한 諸經費의 還收에 대비한 諸般對策을 강구하여야 함(派遣教授에 대한 財政保證人 選定 등)

II. 派遣研究機關의 選定 및 招請狀入手要領

1. 派遣研究機關: 派遣國의 主要大學 또는 著名研究所
2. 派遣研究機關의 選定
 - 本人이 提示한 研究機關의 招請狀을 入手(本人이 所屬大學長의 추천을 받아 추진)하여 文敎部에 同意要請
 - 文敎部 同意 確定(細部事項 後述)
3. 招請狀 入手要領
 - 가. 招請狀 記載內容 등
 - 招請機關의 長(大學總·學長, 研究所長, 學科長)名義의 招請狀
 - ※ 美國의 경우, 美移民局 發行 IAP-66 書式(招請狀)으로 代替
 - 招請者와 被招請者의 人的事項

(住所, 所屬, 職位, 姓名 등)

- 招請目的, 滯留資格, 期間 등
- 나. 招請狀入手時 留意事項
 - 所屬校 總·學長과 對象機關長의 公翰協議를 勸奨함.
 - 國家威信損傷 및 低姿勢交渉등의 事例가 없도록 할것.
 - 現地機關의 同意 및 招請身分은 반드시 研究教授, 客員教授, 招請教授등의 身分이어야 하며 學位課程은 認定치 않음.
 - 施設利用料 등을 要求하는 事例도 있으니 可能な 共同研究로 推進하여 不必要한 負擔이 없도록 努力할 것.
 - 希望校의 新學期 및 新學年開始期에 맞추어 7,8月頃 出國할 수 있도록 推進할 것.

III. 出國手續要領

1. 特別保安教育

- 가. 教育日程: 追後 通報
- 나. 本教育은 素養教育을 畢한 者도 全員 參加하여야 하며, 素養教育은 本計劃으로 代替함.

2. 海外派遣研究機關同意要請

- 招請狀 寫本 및 翻譯文 各 1部를 添附하여 文敎部에 同意要請(總·學長 經由)
 - ※ 美國志望教授는 IAP-66書式을 提出하여 招請狀에 같음.
- 文敎部는 招請狀을 檢討하여 同意

3. 海外旅行推薦依賴

- 研究機關 同意가 完了되면 總·學長 經由하여 文敎部에 海外旅行推薦을 依賴
- 提出書類
 - 國·公立大: 身元調査回報書 寫本 1部
 - 私立大: 身元照會畢證 寫本 1部
 - ※ 私立大 教授는 出國 2個月前 外務部 旅券課에 身元照會를 依賴하여야 함.
- 文敎部는 外務部에 海外旅行推薦(旅券發給依賴)

4. 旅券申請

- 文教部の 出國手續通知에 따라 本人이 外務部 旅券課에 申請
 - 國·公立大：官用旅券發給
 - 私立大：一般旅券으로 發給하되, 派遣教授의 旅券에는 “記載變更本部許可”表示를 하여 追後 記載事項 變更申請時 官用旅券에 準하여 處理함.

5. 入國査證(VISA)申請

- 旅券을 交付받은 後 派遣希望國別 入國査證을 다음에 의거 申請함.

가. 美 國

- 美國大使館에 申請
- 提出書類
 - 旅券
 - IAP-66書式(招請狀)

나. 英國, 獨逸, 프랑스

- 該當國大使館에 申請
- 提出書類
 - 旅券
 - 招請狀

다. 日本 및 其他國

- 該當國大使館에 申請
- 비자申請을 받고 自國政府에 照會後 發給
- 提出書類
 - 旅券
 - 招請狀

6. 經費支給申請

- 出國手續終了後, 文教부에 總·學長 經由, 經費支給을 要請(出國豫定日 明示)
- 提出書類

- 研究計劃書(學術研究助成費支援 申請書)

- 旅券 및 비자寫本 1部
- 研究記錄簿(所定書式) 3部
- 誓約書(所定書式) 1部

- 文教부는 本人에게 經費支給 및 外貨換金推薦

※ 航空料는 “政府航空運送依賴에 관한 規定”에 依據 當部가 發給한 航空運送依賴書를 所持하고 本人이 (株)大韓航空 公務海外旅行部를 訪問, 同 課類를 提示한 後 航空券을 交付받아 出國하여야 함.

※ 文教部에서 支給하는 經費外에 別途로 圖書購入, 資料蒐集費등으로 外貨를 持參하여 出國코자 할 경우에는 人的事項 換金推薦要請額, 用途 등을 記載한 外貨換金推薦申請書를 總·學長經由 文教部에 提出하여야 함. (限度額: U.S.\$ 3,000).

7. 滯在地 到着報告

- 現地 到着 7日內 現地公館에 申告를 마치고, 到着 15日內 總·學長을 經由하여 到着申告書(所定書式)를 文教部에 提出하여야 함.

※ 派遣教授의 滯在地 到着申告書上의 連絡處로 分期別 研究 滯在費의 送金을 通知케 되며 各種 連絡網으로 活用케 되니 正確히 記載하여야 하며 住所 變更時에도 即時 公館, 文教部, 學校에 申告하여야 함.

“私學에 대한 財政支援의 年次的 擴大 및 財政運營體制改善”

I. 私立大學의 施設擴充資金 融資支援

1. 背景과 推進經過

7·30 教育 正常化 조치에 따라 大學生 수는 급증하였으나 이들을 受容할 施設이 대학마다 不足한 實情이다. 이에 따라 當面課題解決을 위한 한 方案으로 長期 施設擴充 資金의 支援을

대통령각하께 建議하였던 바, 총 규모 800억 원을 政府가 81년부터 3年間 支援하기로 하였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협조를 받아 81年度에 400억 원을 58개 대학에, 82年度에 200억 원을 52개 대학에, 이미 支援한 바 있고, 83年度에 200억 원을 支援하기로 되었다.

支援對象 施設은 校舍·圖書館·學生會館·寄宿舍의 외곽시설에 한하며, 條件은 3년 거치 7년 均等 分割 償還으로 상환조건이 유리하고 融資實施는 大學의 주 거래은행을 活用하게 되어 있다. 이는 私立大學이 納入金 依存도가 90%를 상회하는 財政의 취약성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學父母의 教育費 負擔 增加에 따른 學生의 勉學 機會의 保護問題가 現實의으로 提起되고, 또 納入金 引上에도 限界가 있으므로 當面한 敎職員 增員과 處遇改善 및 獎學金 擴大등 財政需要가 계속 增加一路에 있으므로 長期施設資金을 政府가 앞선하여 증으로써 私立大學의 負擔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2. 效 果

81年度 實 執行額 400억 원은 私立大學 총 예 산규모 3,713억 원의 10.5%에 相當하며 自體資金 475억 원을 포함 875억 원을 投入·教育施設을 早期 擴充하여 支援資金의 파급효과는 2배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는 82年度 私立大學 納入金 總 規模 4,479억 원에 對比시켜 볼 때 學生 1인 당 年間 納入金 10% 引上 要因에 해당하고 私學에 면학여건 改善에 週期的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3. 向後計劃

향후 大學이 必須 教育施設을 擴充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金인 경우 償還財源 마련에 큰 부담이 없을 경우, 關係部處와의 協議에 따라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I. 私立工科大学에 대한 財政支援

1. 背 景

政府의 重化學工業 育成方針에 따라 科學技術과 高級技術 人力에 대한 需要增大에 對備하여

理論과 實技를 겸비한 適應力이 높은 國際水準의 工學技術者 양성이 시급한 實情에 있다. 이러한 고급 기술자의 양성은 대부분 大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人材의 養成에는 資質이 높은 敎授要員의 確保와 工學教育에 必須의인 施設設備의 공급이라는 教育投資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私立大學은 소요 教育費의 대부분을 學生의 納入金에 依存하는 財政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狀態下에서도 大學에서 排出되는 人力의 70% 以上을 私學이 負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요계원의 70% 이상을 國庫에서 負擔하고 있는 國立大學과 비교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私學이 지고 있으므로 國家的 公益的 見地에서 私學, 특히 私立 工學系 學科에 대한 支援이 이루어져야 할 立場에 있다.

제 5차 IBRD 教育借款 協定文에도 私立 工科大学 運營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對策으로 借款投資와 병행하여 私立工大를 政府가 支援할 것을 明記하고 있다.

2. 推進經過

따라서 81년 7월 28일, 經濟企劃院 長官과 82년부터 86년까지 향후 5개년간 매년 39억원씩 195억 원을 지원하기로 協議가 이루어졌고 82년도 文教部 소관 豫算에 36억원이 반영되어 이를 26개 工科大学의 學科, 學生數등을 감안하여 1校당 8천7백만원에서 2억원까지 배분한 바 있다. 우수 工科大学은 별도로 支援하는 한편 資金의 使用 用途는 工學系學科의 實驗·實習·設備基準 上 부족한 器資材 構入에 한하도록 하였다.

3. 效 果

支援의 波及效果를 감안 工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기할 수 있는 勸獎指表를 設定하였다.

첫째, 敎授確保 및 資質向上으로서 目標年度인 86년에는 專攻敎授 1인당 學生數가 30명(졸업 정원제 30% 加算한 學生數 基準)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施設의 確保로서 目標年度인 86年度에 80% 線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同時에

세계, 設備는 目標年度에 90% 이상 水準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 敎科運營 및 實驗實習敎育의 充實度 등을 고려하여, 이상의 諸 與件改善을 위한 勸奨 指標 移行 여부는 매년 工學系 敎育評價를 實施하여, 評價結果에 따라 당해년도 支援對象 學校, 支援金額 등의 基準을 設定하기로 하였다.

또한, 自體 工學敎育 發展計劃의 수립 및 推進은 물론 構入되는 實習 器資材 品目選定の 嚴正化와 價格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大學별로 工科大學 學長과 敎授 및 關係處長으로 構成되는 「工學 敎育 審議 委員會」를 設置 運營함의 의무화하였다.

4. 向後 推進計劃

私立 工科大學에 대한 支援은 支援效果의 다양성과 大學 자체의 發展을 위한 意志와 노력등을 감안하여 地域別, 特性化, 大學院 敎育과의 連繫性強化등을 감안하여 우수한 工科大學에 대한 集中支援등도 計劃하고 있다.

Ⅲ. 私立大學의 財政運營體制 改善을 위한 施策

1. 大學財政運營의 效率化를 위한 努力

大學進學 人口의 增加는 財政規模의 擴大는 물론 敎職員數의 增加, 施設擴充 등으로 學校經營管理의 效率化를 위한 새로운 經營體制의 改編과 經營方式을 要求하고 있다. 이에 따라 財政運營의 改革方案으로

첫째, 會計統合 및 豫算科目의 整備는 이미 79년에 斷行하였고 중견의 實驗實習費와 自律的 經費의 會計를 學校 校費會計에 統合運營하게 하여 대학마다 별도 會計處理에 따른 業務의 번잡을 없애고 資金管理의 效率化는 물론 經費의 증부 執行處理등 運營의 效率化를 기하게 하였다.

둘째, 大學經營의 目標管理를 할 수 있도록 經營指標를 設定하여 分析體制를 79년부터 開發하였고, 이 經營分析 結果를 各 大學에 通報하여 自體經營에 參考하게 하였는데, 그 主要 內

容은 아래와 같다.

- 敎授 및 施設確保를 中心으로 한 學習여건의 改善
- 受益者 負擔輕減 및 장학금 확대
- 支出 敎育費 配分의 적정화
- 敎職員의 專門性 提高
- 法人의 經營學校에 대한 寄與度 增大等이다.

세계, 79년부터 豫算編成에 있어서 財源配分의 適正模型을 권장하였던 바 運營費의 경우 78년 16.9%이었던 것이 82년에 9%로 비율이 7.9%나 감소되었고, 學生經費의 경우는 장학금의 擴大支給 및 敎育課程 運營과 關聯되는 經費配分의 擴大등으로 78年度 13.8%이었던 것이 82년에 20.2%로 7%나 向上되었으며, 資金管理의 強化로 인한 利子 수입금은 78년도의 경우 納入金 總액비율 1.9% 이었던 것이 81年度 3.1%로 크게 향상되었다.

비례, 중견에 私立學校法 施行令上(제13조)에 學校 新·增築 施設의 執行制限規定을 81.5.21자로 改定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變態經理의 不條理를 시정하게 되었다.

다섯째, 집행될 決算資料는 졸업정원 500명 이상인 경우는 公認會計士인 監事의 檢査畢報告 書를 받드시 첨부하여 提出하게 하며 自體統制 및 檢證機能을 強化하여 私學財政의 公信力을 提高토록 하였다.

2. 새 財政會計制度 制定 施行

私立大學 財政會計制度는 制定된지 오랜 時間이 經過하였고, 單式簿記體制로 되어있어 運營에 不合理한 점이 많으므로 79年度 12월 이 分野의 專門家들에게 委囑研究하여 작성된 改定案을 토대로 主要大學 經理課長 實務協議會를 構成하여 文教部, 研究陣, 實務陣과의 수차에 걸친 協議를 거쳐 81.2.28일자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새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였다. *